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학대학원”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제3조 (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 제2장 입학

제5조 (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에 대한 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입학지원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

학원은 각각 당해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이하“입문검사”라 한다)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 (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 (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직원 입학제한) ①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 정관 제104조에서 규정한 【별표3】 및 【별표4】의 의료직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104조에서 규정한 【별표2】의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정원의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4조 (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

한다.

- ② 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을 허가 할 수 있다.
- ④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적변동

제16조 (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 대학원	일반대학원	4개 학기	6개 학기	4개 학기
전문 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개 학기	4개 학기	2개 학기
	국제대학원	2개 학기		2개 학기
	체육대학원	2개 학기		2개 학기
	의학대학원	6개 학기		6개 학기
	치의학대학원	8개 학기		8개 학기
	법학대학원	4개 학기		4개 학기
특수 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개 학기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개 학기		

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생, 동서의학대학원생, 국제대학원생 및 특수대학원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하는 인턴십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휴학 관련 기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제18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19조 (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는 별개로 각 대학원의 내규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3회이상 받은 자
6.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7. 통산 2회 유급이 된 자
8.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년한 5년을 초과한 자

②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③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 제4장 수업년한 · 교과과정 · 학점 · 성적 및 수료

제20조 (수업년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 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	4년	2년
	일반대학원 - 전문간호사교육과정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2년6개월		
전문 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년	4년	2년
	국제대학원	2년		2년
	체육대학원	2년		2년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7년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7년
	법학대학원	3년		2년
특수 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6개월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 체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재외국인 대상 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년한은 1년 6개월으로 한다. 단, 과정운영에 있어서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4학년 1학기 재학 중 대학원 입학허가받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 “예약입학자”라 한다) 및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학기로 한다.

제22조 (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3조 (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재학 시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문간호사과정은 33학점, 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설계분야는 33학점(건축학과 건축설계 및 설계분야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수료인정학점은 39학점)

2. 경영대학원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다만,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건설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 33학점(다만, 유엔평화학과는 24학점)

5. 공공대학원 32학점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 30학점

④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⑥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4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 학점 및 추가이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3.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4.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5.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6. 평화복지대학원 12학점

7. 체육대학원 12학점

8.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9.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3.7 이상이거나 학과주임교수가 허용하는 경우 18학점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은 학점에 관계없이 18학점

10.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11. 이외 특수대학원 8학점

12.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③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보충과목 이수)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에 입학한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 (학업평가)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등 급	점수			평점
	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 법학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치의학대학원	
A+	93~100	97~99	93~100	4.3
A	90~92	94~96	90~92	4.0
A-	87~89	90~93	87~89	3.7
B+	83~86	87~89	83~86	3.3
B	80~82	84~86	80~82	3.0
B-	77~79	80~83	77~79	2.7
C+	73~76	77~79	73~76	2.3
C	70~72	74~76	70~72	2.0
C-	67~69	70~73	67~69	1.7
D+	-	-	63~66	1.3
D	-	-	60~62	1.0
D-	-	-	57~59	0.7
F	66점 이하	69점 이하	56점 이하	0
I(미완)				
P(합격)				
NP(불합격)				

의학대학원			
등 급	점수		환산점수
	평점	점수	
A+	4.3	93~100	100
A	4.0	90~92	92
A-	3.7	87~89	89
B+	3.3	83~86	86
B	3.0	80~82	82
B-	2.7	77~79	79
C+	2.3	73~76	76
C	2.0	70~72	72
C-	1.7	67~69	69
D+	1.3	63~66	66
D	1.0	60~62	62
D-	0.7	57~59	59
F	0	56점 이하	0
I(미완)			
P(합격)			
NP(불합격)			

제29조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C(2.0)이상으로 하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균성적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성적등급 I(미완)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④ 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내지 【별표3】 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추가로 취득하거나 졸업 작품, 졸업시험, 인턴십보고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의 발표 등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수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 (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은 제4호의 요건을, 일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동서의학대학원은 제2호의 요건을, 경영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대학원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기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박사과정 이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 (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9조 (학생의 의무)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의 재학생은 제1항에 더하여 내규에서 정하는 삼정서헌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삼정서헌장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유엔평화학과 학생은 본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0조 (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 (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되 무기정학·제적 처분은 해당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42조 (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7장 공개강좌·위탁학생·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 (공개강좌) ①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44조 (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45조 (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본교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용어의 정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수업이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방법은 학칙의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운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본교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48조 (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 (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50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한다.

제51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2조 (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한다.

## 제10장 보칙

제54조 (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 (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 (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감사행정원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③ 감사행정원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일반대학원장은 감사행정원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용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 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는 농학과로 학생을 선발 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 ③항, 제25조 ②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 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위기 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 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 ③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④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 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 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서울캠퍼스)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인원
인문 사회 계열	국어·국문학	문학석사		인문 사회 계열	국어·국문학	사학(미술사 제외)	문학박사	
	영어·영문학	문학석사			영어·영문학		문학박사	
	사학	문학석사			사학		문학박사	
	철학	철학석사			철학		철학박사	
	사회학	사회학석사			사회학		사회학박사	
	법학	법학석사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		행정학박사	
	정치학	정치학석사			정치학		정치학박사	
	언론정보학	언론학석사			언론정보학		언론학박사	
	경제학	경제학석사			경제학		경제학박사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		경영학박사	
	의료경영학	의료경영학석사			의료경영학		의료경영학박사	
	무역학				무역학			
	-국제경제전공	경제학석사			-국제경제전공		경제학박사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경영학석사			-국제경영/무역경영전공		경영학박사	
	회계·세무학	경영학석사			회계·세무학		경영학박사	
	관광학	관광학석사			관광학		관광학박사	
호텔경영학	관광학석사	호텔경영학	관광학박사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관광학석사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관광학박사					
조리외식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석사	조리외식경영학	조리외식경영학박사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석사							
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	교육학박사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석사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박사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학석사	주거환경학	주거환경학박사					
의상학	의상학석사	의상학	의상학박사					
자연 과학 계열	수학	이학석사		자연 과학 계열	수학	수학	이학박사	
	생물학	이학석사			생물학	생물학		
	지리학	이학석사			지리학	지리학		
	물리학	이학석사			물리학	물리학		
	화학	이학석사			화학	화학		
	식품영양학	이학석사			식품영양학	식품영양학		
	기초약학	약학석사			기초약학	기초약학		
	한약학				한약학	한약학		
	-생명한약학전공	한약학석사			-생명한약학전공	-생명한약학전공		
	-창약학전공	약학석사			-창약학전공	-창약학전공		
	간호학	간호학석사			간호학	간호학		
나노의약생명과학		나노의약생명과학	나노의약생명과학					
-유기화학/생명과학	이학석사	-유기화학/생명과학	-유기화학/생명과학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뇌과학전공					
-의약약학/약학	약학석사	-의약약학/약학	-의약약학/약학					
/나노생명약제학전공		/나노생명약제학전공	/나노생명약제학전공					
-한약학전공	한약학석사	-한약학전공	-한약학전공					
예 · 체능 계열	무용학	무용학석사		예 · 체능 계열	공연예술학		무용학박사	
	음악학	음악학석사			-무용학전공	예술경영학박사		
	미술학	미술학석사			-예술경영학전공	음악학박사		
의학 계열	의학	의학석사		의학 계열	의학	의학	의학박사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		
	-기초의과학전공	이학석사			-기초의과학전공	-기초의과학전공		
	-의학전공	의학석사			-의학전공	-의학전공		
	치의학				치의학	치의학		
	-치의학전공	치의학석사			-치의학전공	-치의학전공		
	-이학전공	이학석사			-이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공학석사			-공학전공	-공학전공		
	기초한의과학				기초한의과학	기초한의과학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한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이학석사			-이학전공	-이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과학석사			-의과학전공	-의과학전공		
	-의공학전공	의공학석사			-의공학전공	-의공학전공		
	임상한의학				임상한의학	임상한의학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한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신경과학	이학석사			신경과학	신경과학		
	글로벌보건환경정책학과				글로벌보건환경정책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한의학전공	한의학박사					
-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	-보건학전공	보건학박사					
한의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과	한의학박사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인원	
학과 간 협 동 과 정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이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과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경락의과학과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과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소셜네트워크과학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철학석사 한의학석사 한의학석사 문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보건학석사 한의학석사 공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석사 치의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한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공학/치의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치의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약학석사 이학/의학석사 이학/한의학석사 이학/치의학석사			학과 간 협 동 과 정	동서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이 한의철학 -철학전공 -한의학전공 한의역사학 -한의학전공 -사학전공 한의생명과학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한방응용의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보건과학전공 한방인체정보의학과 -한의학전공 -공학전공 생체의과학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간호학전공 -이학전공 경락의과학과 -한의학전공 -의학전공 -이학전공 암예방소재개발(MRC)학과 -한의학전공 -이학전공 소셜네트워크과학 구강악안면재생학 -구강생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구강미생물학전공 -악안면조직재생학전공 -악안면생체공학전공 -예방/사회치과학전공 KHUKIST 융합과학기술학과 -이학전공 -공학전공 -약학전공 -의학전공 -한의학전공 -치의학전공	정보디스플레이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한의학박사 문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공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치의학박사 간호학박사 이학박사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공학/치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공학/치의학박사 치의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약학박사 이학/의학박사 이학/한의학박사 이학/치의학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학 · 연 · 산  협 동 과 정		
서울C 석사 소계			568	서울C 박사 소계			363		

【별표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국제캠퍼스)

석사학위 과정(국제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인원
인문사회계열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화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어문화학 국제학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국제학석사	328	인문사회계열	영미어문화학 동양어문화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유럽어문학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국제한국어문화학 국제학	동양어문학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국제학박사	147
자연과학계열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자연과학계열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물신소재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 한방재료가공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 환경조경학 원예생명공학과 환경응용과학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우주과학 우주탐사학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계열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계열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전자·전파공학 생체의공학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체능계열	체육학 도예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 포스트모던음악학 연극영화학	체육학석사 미술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 건축학석사 미술학석사 음악학석사 연극영화학석사		예·체능계열	체육학 조형디자인학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건축학 디지털콘텐츠학과 응용예술학	건축학	체육학박사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박사 건축학박사 미술학박사 예술학박사	
학·연·산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학·연·산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사 소계			328	박사 소계			147	
일반대학원 석사 총계			896	일반대학원 박사 총계			510	

【별표2】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50명
			의학전공	의학석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석사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한의학석사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전공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박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박사	20명
			의학전공	의학박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박사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	한의학박사	
		노인학과	노화의과학전공	의과학박사	
			노년학전공	노년학박사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국제통상협력학석사	45명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석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석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석사		
	박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경제학전공	국제통상협력학박사	1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박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박사		
체육대학원	석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태권도·골프 전공	체육학석사	20명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전공		15명	
	박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골프 전공	체육학박사	20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의학과	의무석사	110명	
	박사학위	의학과	의과학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80명	
	박사학위	치의학과	치의과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법학	전문법학석사	60명	
	박사학위	법학	전문법학박사	10명	
<b>석사학위과정</b>				<b>190명</b>	
<b>박사학위과정</b>				<b>60명</b>	
<b>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b>				<b>110명</b>	
<b>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b>				<b>80명</b>	
<b>총 인 원</b>				<b>440명</b>	

※ 의학전문대학원(110명), 치의학전문대학원(80명)의 경우 입학정원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관계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총인원에 포함시켰음.

【별표3】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경영, 세무관리, 국제경영, 경영컨설팅·서비스, 빅데이터경영, 중국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경영학 석사	204명
		의료경영학과		의료기관경영, 의료정책, 의료산업경영	의료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물관·미술관경영, 공연예술경영,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학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	서울 캠퍼스	교육행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정보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석사	284명
			국제 캠퍼스	일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도예교육, 체육교육, 초등영어교육, 교사리더십, 영어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100명
공공대학원	석사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석사	110명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보건행정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		국제평화	국제정치학석사	35명
				아태지역	지역학석사	
				대안정치거버넌스	정치학석사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	평화학석사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80명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저널리즘학과		신문잡지, 방송	언론학석사	46명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법무대학원	석사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 미국법, 자산관리법	법학석사	32명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학과		중국법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 인터넷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관광대학원	석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95명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석사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	아트기획학과		아트기획	예술학석사	45명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b>계</b>						<b>1,031명</b>